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당 현수막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조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22.12.11.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이와 더불어 옥외광고 시장 환경 및 사회 변화에 따른 규제개선 요구에 맞춰 옥외광고 규제 7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 규정(안 제35조의2)

-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과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시장 등이 발행한 표지를 현수막에 부착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표시하도록 함.

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광고물의 동영상 및 색상 제한 예외(안 제14조)

-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전기 사용 광고물(네온류,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서는 표시방법 중 동영상 및 신호등 색상 표시 제한의 예외를 인정함

다. 간판 수량 산정시 디지털 공유 간판은 예외 적용(안 제12조)

- 전통시장에 설치되어 입점 점포와 지역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벽면 이용 디지털 공유 간판에 대해서는 간판 수량 산정시 산입하지 않음

라. 영업중인 음식판매 자동차는 전기 사용 광고 허용(안 제19조)

- 교통수단 이용 광고 규제는 교통수단 운행 중 광고물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음식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영업 중인 음식 판매 자동차에 한해 광고물 표시면적 제한, 전기 사용 금지 등의 예외를 인정함

마. 공유자전거의 광고물 설치 근거 마련 및 상업광고 허용(안 제2조, 제4조, 제19조)

- 1) 공유자전거의 대중화로 이를 활용한 광고 요청이 증대됨에 따라 공유 자전거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포함함
- 2) 공유자전거에 상업광고 설치가 가능하게 하며, 광고물을 밀착하여 부착하도록 함

바. 항공기 상업광고 허용(안 제4조, 제19조)

- 광고 기술 발전 및 항공기 전면광고 허용 요구 증가에 따라 항공기 외부에는 창문을 제외한 본체 옆면 1/2 이내에 자사광고만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창문을 제외한 본체 전면에 대한 상업광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현수막 지정게시대 표시기간 자율성 부여(안 별표1 제7호)

- 1) 일반적인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15일 이내로 두는 현행 규정은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 다른 현수막 설치 수요가 없는 때에도
15일 경과시 일괄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에 한해서는 지자체장이 표시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광고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지자체 경계 지역 안내 간판 제도화(안 제29조)

1)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를 안내하는 간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모두 불법 광고물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음

2)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계 지역 안내 간판을 표시방법 제한을 받지
않는 공공목적 광고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에 활용되는 자전거(이하 “공유자전거”라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의 교통수단”을 “각 목의 교통수단(단, 항공기 등 중 비행선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항공기 등

- 마. 공유자전거

제12조제8항 단서 중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을 “다음 각호의 광고물의 경우 1개씩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2. 전통시장 또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업소와 소상공인을 광고하는
벽면 이용 디지털광고물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4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음식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행선”을 “항공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행선의”를 “창문을 제외한 본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등”을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 시장등”으로 하고, 같
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을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음식판매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1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유자전거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29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변경을 안내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의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제외한 도로를 의미한다) 경계에 설치하는 지주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하며,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적용배제) 법 제8조제8호에 따른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현수막에는 시장등이 발행한 표지에 표시장소, 표시기간, 표시자의 연락처를 작성하여 부착해야 한다.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3. 표지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표시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1년 이내 |
| ·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
| ·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시장등이 정하 |

는 기간 이내

· 그 밖의 현수막: 15일 이내

· 현수막 게시시설: 3년 이내

부 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가. ~ 마.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에 활용되는 자전거(이하 “공유 자전거”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 -----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다만, 가목, 나목 및 라목의 교통수단에 제19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다. 항공기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

라. (생략)

<신설>

10. ~ 13. (생략)

② (생략)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

⑦ (생략)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

-----.

1. ~ 8. (현행과 같음)

9. -----

-----.
----- 각 목의 교통수단(단, 항공기 등 중 비행선은 제외한다)-----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항공기 등

라. (현행과 같음)

마. 공유자전거

10.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⑨ (생 략)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의 표시방법) ①·② (생 략)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단
서 신설>

1. ~ 5. (생 략)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
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
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

-----.

다음 각호의 광고물의 경우 1개
씩을 -----

-----.

1.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
판

2. 전통시장 또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업소와 소상공인을 광
고하는 벽면 이용 디지털광고
물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의 표시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은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④ -----

-----.

1. -----

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 ~ 5. (생략)

⑤ (생략)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 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2. (생략)

② 비행선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비행선의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 . 다만,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 . 다만, 음식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항공기등-----

1. 창문을 제외한 본체 -----

--.

2.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 시장등-----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1. ~ 3. (생략)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 ①·② (생략)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자동차 -----

1. ~ 3. (현행과 같음)

⑥ -----

----- .다만, 음식판매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
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⑦ 공유자전거에 표시하는 광고
물은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
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
다.

1. ~ 9. (생 략)

<신 설>

④ ~ ⑦ (생 략)

<신 설>

--.

1. ~ 9. (현행과 같음)

10.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변경을 안내하기 위하여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군의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와 일
반국도를 제외한 도로를 의미
한다) 경계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
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내
인 간판으로 한정하며,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적용배제) 법 제8조제8
호에 따른 현수막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현수막에는 시장등이 발행한
표지에 표시장소, 표시기간,
표시자의 연락처를 작성하여
부착해야 한다.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3. 표지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
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544